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1)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는 기간(안 제7조2 제1항 신설)
-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치농업기계의 기준(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폐기 또는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안 제7조의2 제4항 신설)
- 5) 방치농업기계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함(안 제7조의2 제5항 신설)

6)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할 수 있는 방치농업기계의 기준(안 제7조의2 제6항 신설)

나.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표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처분 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기계가 법 제8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이하 “방치농업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의7제3항에 따라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 법 제8조의7제3항에 따른 방치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농업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농업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직접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농업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업

기계

별표 제1호라목 중 “제2호버목”을 “제2호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법 제19조제1항 제1호	500	750	1,000
--	---------------------	-----	-----	-------

별표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농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제2호서목의](#) 경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법 제19조제1항 제1호	500	750	1,000

<u>나.</u>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2	500	750	1,000
<u>다.</u>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3	500	750	1,000
<u>라.</u>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0	750	1,000
<u>마.</u> 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3호	500	750	1,000
<u>바.</u>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4호	500	750	1,000
<u>사.</u>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5호	500	750	1,000
<u>아.</u>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6호	500	750	1,000
<u>자.</u> 법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7호	500	750	1,000
<u>차.</u> 법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 제1호	50	75	100
<u>카.</u>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8호	500	750	1,000
<u>타.</u> 법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 제2호	50	75	100
<u>파.</u> 법 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9호	500	750	1,000
<u>하.</u>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	법 제19조제1항	500	750	1,000

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보관한 경우	제10호			
<u>거.</u>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 제3호	50	75	100
<u>나.</u>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1호	500	750	1,000
<u>다.</u> 법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2호	500	750	1,000
<u>라.</u> 법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 제4호	50	75	100
<u>마.</u> 법 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3호	500	750	1,000
<u>바.</u>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 제5호	25	50	100
<u>사.</u>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시정한 경우 2)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정한 경우 3) 시정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 제6호	25 50 100		
<u>아.</u>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200	300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처리)</u>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처분 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기계가 법 제8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이하 “방치농업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의7제3항에 따라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 법 제8조의7제3항에 따른 방
치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농업기
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
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농업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직접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
이 곤란한 상태의 농업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
· 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
란한 농업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
하여 특히 폐기할 필요가 있
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u>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인정하는 농업기계</u>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 - 1897